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63호
개정	2006. 1. 11	조례 제 791호
	2006. 4. 12	조례 제 799호
	2006. 10. 13	조례 제 831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
전문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
개정	2007. 12. 17	조례 제 910호
전문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66호(제명개정)
개정	2009. 6. 26	조례 제1039호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2010. 2. 23	조례 제1070호
	2010. 8. 2	조례 제1091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5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192호
일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2. 9. 6	조례 제1243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15. 5. 18	조례 제1453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1호(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
전문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36호(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5. 14	조례 제1799호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

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 담당관, 단장, 과장, 읍·면·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6>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 가.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 나.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 다. 환경위생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자치행정실, 재정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일자리산업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8. 10. 16>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7조(자치행정실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실에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직원복지, 의회협력, 공무원관리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자치분권, 주민자치, 국내·외 교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3. 인사, 공무원교육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4.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5.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8조(재정국에 두는 과) ① 재정국에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관한 사무
2. 지출·계약, 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9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6>

1.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무
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여성회관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무
4.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
5.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제10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훈, 사회서비스, 생활보장 및 무한돌봄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3.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
4. 여성정책, 태교도시, 건강가정, 다문화에 관한 사무
5. 아동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

제11조(일자리산업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를 둔다.

② 일자리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고용, 사회적경제, 소비자유통,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무
2. 기업지원, 투자유치, 노사협력, 기업SOS, 공장등록, 산업입지에 관한 사무
3. 농업, 농업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무
4. 축산, 가축환경, 말산업육성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무
5. 산림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
6. 동물문화, 동물보호 및 동물구조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미래전략사업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6>

1. 도시계획 및 시설계획, 지구단위에 관한 사무
2.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균등발전 등에 관한 사무
3. 미래산업, 플랫폼시티, 역세권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4. 도시재생, 주거환경, 공공개발에 관한 사무
5. 지적,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 10. 16]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

건축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택에 관한 사무
2. 건축에 관한 사무
3. 경관정책, 공공디자인, 광고물행정에 관한 사무
4. 공공청사, 공공건축, 건축설비에 관한 사무

제14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무
2.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운영 및 택시·화물운수에 관한 사무
3. 철도계획, 경량전철에 관한 사무
4. 도로, 교량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하천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
 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
 1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15.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16. 비료·농약·토양·수질·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17. 주요 농산물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18.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무
- 제18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2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을 둔다.
2. 환경위생사업소에는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를 둔다.
3.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를 둔다.
4.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를 둔다.

5.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를 둔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1. 도서관사업소

- 가. 도서관 정책, 독서진흥에 관한 사무
- 나.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 다.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 라.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2. 환경위생사업소

- 가. 환경보전 및 수질에 관한 사무
- 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
- 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공사에 관한 사무
- 라.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 마. 대기에 관한 사무
- 바.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무
- 사.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시설물관리, 재활용에 관한 사무
- 아. 위생관리, 위생지도 및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무

3. 푸른공원사업소

-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무
- 나. 동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 다.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4. 상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나.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
- 마.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다. 하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라. 하수재생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무

마. 분뇨·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6.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

나. 특별사법경찰, 차량체납, 차량세무에 관한 사무

다. 검사보험에 관한 사무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구청장) 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처인구에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를 두고, 기흥구와 수지구에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6>

제2절 읍·면·동

제2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 10. 16]

제31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리·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중전 제30조에서 이동 2018. 10. 16]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73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0. 16>

1. 집행기관의 정원: 2,69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

제3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②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③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의 위원장란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46조, 제47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⑬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⑮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⑯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⑰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⑱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⑲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⑳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㉑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㉔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㉕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㉖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㉗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㉘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52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㉙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㉚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㉛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제61조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㉝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㉞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㉔ 「용인시 문화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㉕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㉖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㉗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㉙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㉚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 ㉛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㉜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㉝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㉞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㉟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중 “4급

각 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

④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④⑥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⑦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⑧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⑨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⑩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⑪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⑫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⑬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4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⑤⑮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⑯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7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8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국장”을 “실장, 국장, 소장”으로 한다.

⑤9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0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1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2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3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3, 5의 차장란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4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6 「용인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7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⑧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⑨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⑩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⑪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⑫ 「용인시 태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⑮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⑯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⑦⑱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㉟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㊱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㊲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㊳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㊴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6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인구의 기관명 중 “모현면사무소”를 “모현읍사무소”로 하고 처인구의 모현읍사무소(당초의 모현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 사	현 부	읍 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일원
--------	--------	--------	----------------------	--------

별표 1의 처인구의 모현읍사무소란(당초의 모현면사무소란) 다음에 이동읍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사	동 부	읍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일원
--------	--------	--------	----------------------	--------

별표 1의 처인구의 이동면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이동상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	----------------------	-----

별표 3의 “모현면 보건지소”를 “모현읍 보건지소”로 하고 모현읍 보건지소란(당초의 모현면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 현 읍 보 건 지 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 현 읍 일 원
---------------	----------------------	-----------

별표 3의 모현읍 보건지소란(당초의 모현면 보건지소란) 다음에 이동읍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동 읍 보 건 지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 동 읍 일 원
---------------	----------------------	-----------

별표 3의 이동면 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처인구의 관할구역란 중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을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교통관리사업소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하고, “교통관리사업

소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녹지과”을 “공원조성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⑤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국장”을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혁신실장,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재정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8. 10. 16>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 인 시 청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용 인 시 처 인 구 보 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기 흥 구 보 건 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용 인 시 수 지 구 보 건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 인 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동부도서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서부도서관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용 인 시 환경위생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62	
	동부공원관리과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62	
	서부공원관리과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4	
용 인 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수도시설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정수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619번길 77	
용 인 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재생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시설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수운영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용 차 량 등 인 록 사 업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용 처 인 구 시 청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기 흥 구 시 청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용 수 지 구 시 청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치 인 구	포사곡읍	읍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모사현읍	읍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일원
	이사동읍	읍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일원
	남사사무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일원
	원사삼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백사암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양사지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중행정복지센터	동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8번길 7	김량장동, 남동 일원
	역주민삼센터	동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	역북동, 삼가동 일원
	유행정복지센터	동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방동, 고림동 일원
	동주민부센터	동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
	기 흥 구	신행정복지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영주민덕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로2로118번길 2	하갈동, 영덕동 일원
구주민갈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	구갈동 일원
상행정복지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상갈동, 보라동 일원
기주민홍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12-14	공세동, 고매동 일원
서주민농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94	농서동, 서천동 일원
구주민성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	연남동, 청덕동 일원
마주민부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	마북동 일원
동주민백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	동백동, 중동 일원
상주민하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	상하동 일원
보주민정센터		동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	보정동 일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수 지 구	풍 덕 천 1 동 행정부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동 일원
	풍 덕 천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	풍덕천동 일원
	신 봉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	신봉동 일원
	죽 전 1 동 행정부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동 일원
	죽 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	죽전동 일원
	동 천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	동천동, 고기동 일원
	상 현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상현동 일원
	상 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	상현동 일원
	성 북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0	성북동 일원

[별표 2] <개정 2017. 12. 11>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2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7	기흥구·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 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북 부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모현면
남 사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원 삼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춘로 7-1	원삼면
백 암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5	백암면

[별표 3] <개정 2017. 12. 11>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19조제3항 관련)

명칭	칭	소재지	관할구역
처보	인건구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 일원
기보	홍건구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 일원
수보	지건구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 일원
포보	곡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모보	현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모현읍 일원
이보	동읍지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이동읍 일원
남보	사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일원
원보	삼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백보	암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양보	지면지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원보	진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1번길 8-1	원암리, 진목리, 전공리 일원
아보	곡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산로6번길 2	아곡리, 완장리, 창리 일원
죽보	능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	죽능리, 목신리 일원
대보	대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71번길 25	대대리, 정수리, 주북리 일원
백보	봉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	백봉리, 고안리 일원
장보	평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3	장평리, 용천리, 옥산리, 석천리 일원
가보	창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	가창리 일원
고보	매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1	고매1, 2, 4, 8동 농서1동
공보	세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	고매3, 5, 6, 7동 공세동 일원
고보	기진료소	용인시 수지구 호수로 11-3	고기동 일원

[별표 4] <개정 2017. 12. 11>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6조제2항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처 인 구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 흥 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 지 구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별표 5]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8% 이상	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6]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5%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8% 이내	6.4% 이상	0.1% 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10% 이내	35% 이상	35% 이상	10% 이내	10% 이내

[별표 7] <개정 2018. 10. 1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2,73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2,686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6	6	-	3	5	2	-
4·5급	3	3	-	-	-	-	-
5급	130	45	4	7	17	26	31
6급 이하 계	2,531	-					
별정직 계	2	-	-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이하 계	2	-					
전문경력관 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	-	-	-	-	-	-
연구사	6	-					
지도직 계	37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33	-					